

# 부천시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7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7월 13일)  
상정 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윤순중)

### □ 제안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「영유아보육법」 등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함.  
(안 제1조·제3조 및 제6조)
- 영유아의 보육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“보육지도원”의 명칭을 “보육전문요원”으로 변경함.(안 제5조 및 제6조제2항)
-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중에서 “의사”를 “전산원”으로 변경함.  
(안 제5조제2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                 | 답변 내용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○ 보육정보센터에 전산원이 꼭 필요한가? | ○ 보육시설 통합관리 등 보육자원 전산화를 추진중에 있어 전산원이 필요하며,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음. |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### 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###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부천시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 | 제122호                  |
| 의결<br>년월일 | 2007. 7. 19<br>(제137회) |

제출년월일 : 2007. 6. 29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「영유아보육법」 등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·제3조 및 제6조)
- 영유아의 보육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“보육지도원”의 명칭을 “보육전문요원”으로 변경함.(안 제5조 및 제6조제2항)
-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중에서 “의사”를 “전산원”으로 변경함.(안 제5조제2항)

##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영유아보육법 제5조의 규정에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2조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9조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보육지도원”을 “보육전문요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사”를 “전산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4조에 의한 보육전문요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육지도원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1 규정에”를 “보육전문요원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<p>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, 간호사,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.</p>   |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<u>전산원</u>-----<br/>-----.</p>  |
| <p>③ (생략)</p> <p>제6조(종사자의 자격) ①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|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종사자의 자격) ① -----<br/>----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4조에 의한 보육 전문요원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
| <p>②보육지도원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1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 한다.</p>   | <p>② <u>보육전문요원</u>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 |
| <p>③ (생략)</p> <p>제7조(운영) ①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  |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운영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u>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</u>-----<br/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      |